

# M&A 계약의 최신 쟁점 손해배상 등 계약조건 면밀히 따져야

**기**업의 인수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대상회사에 관한 진술 및 보장, 상호 이행할 약속, 거래완결의 선행조건, 손해배상 등의 조건이 기재된다. 국내 대규모 M&A(인수·합병)에서 활용되는 인수계약도 글로벌 M&A 시장에서 사용되는 계약의 구조·양식과 유사하다. 인수계약은 그 해석, 이행, 집행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의사, 실무 관행 및 관련 판례를 반영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때로 계약 체결일(또는 기업 가치평가 기준일)로부터 이행 완결일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 리스크를 매도인과 인수인 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인수계약에서는 이 기간 중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거래완결의 선행조건으로 하거나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중대한 부정적 변경은 법률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므로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그 범위와 예외를 정해야 한다. 자산, 매출, 이익, 순부채, 순운전자본 등에 어느 정도 변동이 있어야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액, 비율 등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 '중대한' 혹은 '중요한'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통해 정성적인 판단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상회사가 여러 자회사를 둔 경우 중대한 영향의 발생 여부를 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개 회사를 대상으로 볼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법원은 계약상의 의무를 벗어나는 경우를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중대한 부정적 변경'의 인정에 소극적이다. 실제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 발생한 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중대한 사정적 변경을 주장하며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도인이 제공한 보장 또는 약속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인수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수자가 그 위반사항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완결한 다음 추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매도인을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계약 체결 이후 '중대한 부정적 변경'을 주장하며 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2008년 4월 16일 '한화 글로벌 경영전략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결의하는 한화그룹 사장단.

법원은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한다. 서울고등법원은 한화 에너지 주식양수도 사건에서 인수자가 위반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격 조정이나 계약 문구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므로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우건설 주식양수도 사건에서 인수자는 일단 거래완결을 하고 추후 손해가 현실화하면 배상청구할 의사로 거래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협상 과정에서 위반사항을 알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처럼 아직 판례상의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인수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계약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상으로는 관련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매도인은 인수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기간과 한도를 줄이고자 노력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기간은 통상 거래완결 이후 1~3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주식의 소유권, 인수거래의 적법성, 환경, 조세 등 중요사항은 더 장기간으로 한다. 또한 사소한 금액의 손해도 모두 배상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배상청구가 가능한 손해의 범위를 제한하기도 한다.

즉 개별 손해의 최저 한도를 설정하고(가령 1억원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청구를 허용), 집계한 손해액이 일정한도를 넘어야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가령 개별 청구를 합해 10억원을 넘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배상청구를 허용) 배상총액의 최대한도를 설정하기도 한다(가령 손해배상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도를 설정). 한편 인수자 입장에서는 세금 관련 사항, 경업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❶



**송창현**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 법과대학원 석사(LL.M.), 미국 UC버클리 법과대학원 법학박사(J.S.D.),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M&A·기업소송·정부규제)